

오픈마켓 해외직구식품 국내 구매대행자를 위한

구매대행 식품 등록 시 유의사항

국내사업자용

1

해외직구식품 구매대행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


구매대행 하고자 하는 제품은 반드시 아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제품은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됩니다.

※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영업자가 알아야할 법과 규정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15조(영업등록), 제17조(위생교육), 제20조(수입신고), 제25조의2(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), 제25조의3(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·성분의 지정 및 해제)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제44조의2(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), 제44조의3(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·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), [별표8] 영업자 준수사항, [별표13] 행정처분 기준
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제8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)

동일한 위반 사항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금지 또는 아이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,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3

올바른 제품 정보를 등록해주세요.



구매대행 가능 여부가 확인된 제품은 「전자상거래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」 항목에 대한 제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


해외직구식품은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기준 및 규격)에 따라 제조되거나 정식수입된 **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류에 해당**

- 해외직구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·광고하면 안되며, 제품의 정보는 가공식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사항에 따라 표시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(III. 1 (21)가공식품)

1.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표시사항

- 1-1. 제품명
- 1-2. 식품의 유형
- 1-3. 생산자 및 소재지(수입품의 경우 생산자, 수입자 및 제조국)
- 1-4. 제조연월일,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
- 1-5.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(중량), 수량
- 1-6. 원재료명 및 함량(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
- 1-7. 영양성분(식품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)
- 1-8.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
- 1-9.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
- 1-10.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"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"의 문구

2.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

※ 등록시 주의 사항

-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·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
-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상품 소개에 앞서 표시하는 것을 권장
-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을 '제품 상세정보 참조' 등으로 표시
- 품목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품목 사진은 제품명이 나오는 주표시면과 원료성분명이 나오는 성분표시면을 모두 게시

4

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안돼요!



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의 예방·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 금지

사례 1 질병의 예방·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

- ◆ 판매 식품에 대하여 류마티스 관절염, 퇴행성관절염,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
- ◆ 오메가3 제품을 판매하며 '뇌졸중 예방', '암 예방' 등의 내용의 광고
- ◆ 식품의 섭취 시 지루성 피부염, 아토피 치료, 아토피 발진 및 피부염 증상 완화 등의 효능 효과를 표방 광고
- ◆ 치매예방, 인슐린 조절 기능에 도움, 암 발생을 막아준다는 등 질병의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

사례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

- ◆ 제약회사 개발제품, 병원·약국 판매제품 등을 강조하는 표현 광고
- ◆ 항바이러스제품, 항암제, 여성호르몬제, 천연 항생제 등 의약품으로 표현하는 광고
- ◆ 탈모 모발 성장, 모발성장 촉진제, 모발성장제 등의 의약품 표방 광고
- ◆ 공진(신)단, 경육고, 사군자탕, 쌍화탕, 십전대보탕 등 한약 처방명 광고

사례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

- ◆ 면역력 강화,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개선에 도움, 혈액순환 개선효과 표방 광고
- ◆ 지방분해, 체중감량, 식욕억제, 피하지방 감소, 체지방 감소에 도움 등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내용의 광고
- ◆ 키 성장, 연골 및 관절건강에 도움, 유해균 억제,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, 월경 전 증후군 개선 도움 등의 광고
- ◆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

참고 식품 부당광고 사례 자료 확인 방법

① 웹북	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집 : 식약처 대표 누리집 (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공무원지침서/민원인안내서
② 교육영상	유튜브에서 '사업자가 헛갈리는 식품 표시 광고' 검색 후 확인

5

권장사항

해외직구식품을 판매 등록시 제품에 유통 바코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, 상품식별 코드/제품코드 등 입력란에 공백없이 숫자나 문자 입력 권장

상품
식별
코드



다만, 영유아용 분류(0~36개월 대상), 영·유아용 이유식은 가급적 상품 식별코드(유통바코드 번호) 등록

